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05호)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은정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9. 9.

다. 회 부 일 :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 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행위가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해야하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함.

이에 기존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포섭되지 않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나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 특성에 맞는 형사적 대응을 하고,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 제1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 포함)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2 신설).
- 안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 포함)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4조 제1항 제2호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u>1의2.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u>

현행	개정안
2. ~ 9. (생략) ② ~ ⑤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생략) <u><신설></u> 3. ~ 7.(생략) ② (생략)	<u>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u> 2.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u> <u>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격을 표상하는 가상 캐릭터에 대한 성적 언행과 추행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캐릭터에 대한 성적 언동을 포함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성적 괴롭힘, 모욕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처벌규정과의 중복 가능성 및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
- 개정안의 ‘성적 언동’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이고,
- 따라서 현행 성폭력처벌법으로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이 추가적으로 범죄로

1)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별개로 온라인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목적 및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 가능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하게 되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로 유통이 금지되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어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구체적인 법익 침해와 무관하게 성적인 언동 일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어떠한 행위가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익을 침해·위태롭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²⁾.
- 그런데 개정안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공포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일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한 성적 언동까지 범죄로 규정

2) 오영근·노수환, 「형법총론」, 박영사, 2024, p.75-77.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캐릭터나 계정에 대한 성적인 언동을 성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캐릭터나 계정 등에 대한 성적인 언동까지도 성범죄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가상인물에 대하여도 현실의 이용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존재로서 인격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가상인물에 대한 성적인 언동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가 현실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동등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법체계에서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확대해석될 경우 정보통신망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적 언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³⁾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와 중복의 소지가

3)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적 욕망 내지 만족’, ‘인격의 표상’, ‘디지털 데이터’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개정안에 따른 정보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라 규율이 가능하여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